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13일, 이인선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5.09.10.) 상정, 축조심사, 의결
(원안가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25.) 상정, 소위심
사보고, 찬반토론 및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인선 의원)

현행법은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해 해외 및 국내 사업장 현황,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 사업장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위 법령은 제출서류의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법률에서 정한 위임법령 형식과 실체가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입법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법령 형식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개정안은 국내복귀기업의 지원대상 선정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대통령령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3호).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2. (생략) 3. 그 밖에 <u>대통령령</u> 으로 정하는 서류 ③ ~ ⑤ (생략)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2. (현행과 같음) 3. ----- <u>산업통상자원부령</u> ----- ----- ③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7조는 국내복귀기업 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대통령령, 부령 및 고시에 위임하고 있음.

[표 2] 현행법 제7조에 따른 위임법령 등의 형식

위임조문	위임사항	위임법령 등
제1항제1호	지원대상 선정요건① 既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의 경과기간	대통령령
제1항제2호	지원대상 선정요건②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	부령
제1항제3호	지원대상 선정요건③ 그 밖의 정책목적 달성	대통령령
제2항본문	지원 신청시 각종 기준 및 절차	부령
제2항제3호	지원 신청시 제출서류	대통령령
제3항제1호 ~ 제4호	국내복귀 진행 중인 기업의 지원대상 선정요건 - 신·증설, 청산·양도, 축소 등 완료 기한·기준	고시
제4항	국내복귀기업 선정 여부 결정	대통령령
	선정확인서 발급	부령
제5항	변경통지의 대상	대통령령

이 중 현행법 제7조제2항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려는 기업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거나(제1호, 제2호),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제3호) 하고 있으며, 각종 신청 기준 및 절차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제2항본문)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¹⁾.

[표 3] 참고조문: 현행법 제7조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u>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외 및 국내 사업장 현황 2.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3.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u>
--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제출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있어 법률상 위임입법 형식인 대통령령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음.

1) 참고로 현행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행법 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만 규정하고 있고(참고자료 참조), 현행법 제2항본문에 따른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해당 제출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법률과 실제 행정입법 형식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통상 대통령령은 국정의 통일적 추진 및 집행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비해, 부령은 특정 부처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 복제·서식 등과 같은 절차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정하고 있는 서류(참고자료 참조)는 신청기업 정관, 현지 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해외사업장 관련 증명서류 등으로,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인 국내복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해당함.

이러한 서류는 현행법에 따라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제출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원이)

이인선위원이 대표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음.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대통령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① (생략)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u>대통령령</u> 으로 정하는 서류	3. ----- <u>산업통상부령</u>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